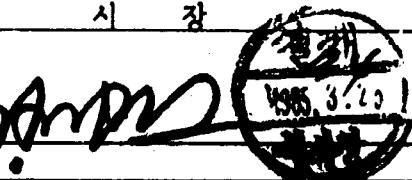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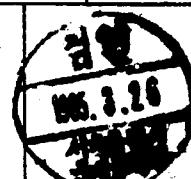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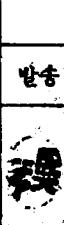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전지 3420-264 (전화번호 731-6383)	전체 규정	조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85. 3.	시장	
시행일자	85. 3.		
보존연한			
보 조 기 관	부 시 장 전 결		
	건설관리국장	총무담당관 실사필	
	건축지도과장	건축계획과장 건축지도과장	
기안책임자	진철훈	85. 3.	
경 우 수 신 참 조	각 안 참 조 85.3.26 고시 제 202	발 시 장	통 제 
제 목	관한위임 사항 고시		
(제 1안) 내부결재			
1. 전지 455-33 (83.1.13)호 및 시장 방침 제0296호 (85.2.19) 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관한 위임되어 시행하고 있는 건축허가등의 업무에 대하여 별첨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업무 조정 방안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3. 건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코자하오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조정 방안 1부. 2. 관한 위임사항 고시 (고시 제25호 83.1.14) 사본 1부.			
(제 2안)			
고 시 (안)		부지 1985.3.6 제 21 호 작성자 법제처장 법무담당관	발송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진철훈	

1205-25(2-1) A(갑)
1981. 12. 18승인

정직 질서 창조

190mm x 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조달청 (1,500,000매 인쇄)

409

건축법상 권한 위임사항 고시

건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개기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 법 제2조 제15호 나목, 법 제5조, 법 제6조 제3항 및 제7항, 법 제7조, 법 제7조의 2, 법 제9조의 2 제3항,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항 및 제5항, 법 제43조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다만, 특정가구 정비지구, 아파트지구 및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의 계획을 완화하는 건축물,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건축물,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대수선, 용도변경, 외장변경 제외)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2. 본 고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5호 (83.1.13)는 폐지된다.

1985. 3.

서 울 특 별 시 장

(제 3안)

수신 총무처 장관

제목 관보 게재 의뢰

1. 건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법상 권한 위임 사항을 별첨 고시문안과 같이 고시하고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보 게재 건명 ; 권한 위임사항

나. 관보 게재 구분 ; 고 시

다. 법 규. 근 거 ;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4010

첨부 고시문 사본 2매.

(제 4안)

수신 공보관

1981. 3. 23
주차증
발진 ; 국장

제목 시보개재 의뢰

1. 건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법상 관한 위임사항을
별첨 고시문안과 같이 고시하고, 다음과 같이 시보 개재를 의뢰하오니 계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나,다, 제3안 가,나,다 이기 시행).

첨부 고시문 사본 2매.

(제 5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건축업무 관한 위임 고시

1. 건축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의 관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함을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람.

가. 관한의 위임내용

(제 2안 고시안 이기 시행). 끝.

수신처: 서구 1-17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업무 조정방안

.....

1. 현 행 제도

가. 근 거

○ 건축법 제4조 (권한의 위임) 제2항

-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 건축법시행령 제4조 (권한의 위임) 제2항

- 구청장 권한 위임 가능 사항
일반지구의 건축허가, 준공검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건설건축물 신고등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 구청장 권한 위임 불가사항
특정지구 정비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
의 건축물, 공적을 저해할 관화하는 건축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 미터 이상)에 관한 권한

나. 우리시의 조치 (32. 12. 1 시행)

- 구청 위임내용 :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 준공검사 업무
* 도심지개발지구 내 건축물은 도시계획국에서 허가, 준공
- 본청 처리사항 : 1,2층 미관지구나 5층 이상, 일반지구의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위원회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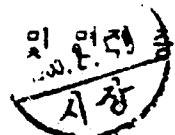
2. 문제점

- 대형건축물에 대한 일부구청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강독 소홀 사태 상존
 - 관계법규 숙지 미흡
 - 건축설비등 전문인력 확보 곤란
 - 대형건축물 집중 관리 곤란 (업무 과다)
- 중앙정부와 협의 이리해야 하는 학교 이적지상 건축물,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건축물 또는 도시설계구역내 건축물등은 관련기관의 관다로 인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 요소가 될
- 대형 건축물 입지승인시 고동 강향 평가 필요성 후고
- 전면 국립이후의 여건 변화에 따른 건축행정의 고도화 필요성에 부응
미흡 ("술을 수준 향상, 장애자 시설 개선등")

*** 서 띠 ***

◦ 귀주고 이적지

- 주 지 : 종로구 7동 110-2
- 읍 수 : 지하3층, 지상12층
- 면 적 : 110,915㎡ (33,610평)
- 지적사항 : 지하수 양장 높이 동출 및 면적 증가



◦ 그랜드 소피센트

- 주 지 : 강남구 대치동 937, 937-1, 2
- 읍 수 : 지하2층, 지상4층
- 면 적 : 41,473㎡ (12,568평)
- 지적사항 : 주된 용도를 기준하여 연면적 20,000 이상
한마시설아트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연면적 20,000㎡ 미만으로 축소 조건의 약약

3. 조정안

◦ 일부 구분

본 청	구 청	경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심의 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설계구역내 건축물 (도시설계 진행구역 포함) -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² 이상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관지구 내 건축물 로서 본 청심의 대상 이외 건축물 - 10세대 이상 연립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다행건축물 심의</u> <u>허가 부서 일원화로</u>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² 이상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청허가 업무 이외 의 건축물 	

◦ 시행시기 : 85. 1. 15 이후 건축허가부

4. 조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 민원 일부 이양 추세에 역행되어, 위 제2항의 문제점은 직원교육 또는 제도적 개선으로 보완함이 오히려 적당하다는 의견
- 작은 변경 (증진 방침 시행후 2년 4개월 초과)은 행정 신뢰 쇄손의 소지 있음.

(실무 과의 의견)

- 장래 건축 행정의 방향은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다투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하기, 승인과정은 전문 종공 기관에서 엄격히 다루고, 검사 업무는 건축공사의 질적향상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의 전문기술 인력을 활용하는 민영위주와 업무 수행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나 다수 인력에 대한 직무 교육이 비효율적일 것인바,
- 대형건축물에 대한 어가가 소수 정예의 전문인에 의한 집중 관리가 오히려 바람직하며, 이는 현행의 본성과 구조체 ~~집약화된~~ 인원 처리로 인한 민원인의 불평이 적지 않은 현실로 보아 더욱 적당함.
- 현 행제도가 대형 건축물이 대하여 건축심의와 어가를 본 청과 구청에서 나누어 2원화 처리하고 있어, 조정안과 같이 실회와 어가투서를 본 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행정신뢰를 저하하지 않을 것임.